

## 충청북도 잠업검사소조례중 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7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7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의하여 기능히 감소된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
- 통합기구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잠업검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통합되는 사업소의 명칭을 "잠업검사소"로 하고,
- 사업소의 기능을 원잠종 생산 등 잠종시험, 생산기능과 잠종, 상묘의 검사와 잠견 검정기능을 통합규정 하는 한편,
- 소장의 직종을 "지방농업연구관"에서 업무기능에 맞게 "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"으로 규정하고,
- 부칙에서 "잠종장조례" 및 "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"를 동시 폐지하는 것임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의거 현재의 잠종장 및 잠업검사소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함에 따라 통합기구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 조례 전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잠종장조례 및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 설치조례를 동시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서,

통합되는 사업소의 명칭을 잠업검사소로 하고, 사업소의 기능과 업무에 있어 우량잠종 및 상묘의 생산과 검사, 중앙잠업시험장과의 지역적 연락시험, 잠업기술의 보급 및 잠업기술원의 양성등 도민의 잠업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수행 업무를 포함 개정하는 것이며,

또한 잠업검사소의 설치, 위치, 소장직종, 초빙강사 수당, 강습생의 숙식제공 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참 부

충청북도 잠업검사소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